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4
----------	----

제출연월일 : 2006년 11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항공사업자는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노선 개설에 소극적이라 6월~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항공사업자의 손익 분기점인 60~70% 탑승율 보전을 통한 국제항공노선 취항 유도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외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에 따른 결손금
 - 공항시설 사용료중 일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내용
 -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국제항공 노선의 평균 탑승율 및 화물량이 항공 사업자의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경우에 결손금 또는 공항시설 사용료의 일부
 - 지원기준·방법·기간 등은 피지원자와 협의·결정할 수 있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중 일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규모 등) ①재정지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율 및 화물량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5조(도비 지원)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금 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한다.

②제5조 규정에 의한 도비지원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기타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4>

1.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1.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2.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
3.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

②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제8조 (목적외 사용금지 및 감독) ①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당해 교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항 공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1.9.12, 2002.2.4, 2003.12.30, 2005.11.8>

26.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7. "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 사업을 말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구분) 법 제2조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간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
2. 관광비행사업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
3. 전세운송사업 :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